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 14조(위원회의 구성) 개정
 -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“행정부지사” 에서 “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 로 변경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②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서 선출한다.	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② ----- <u>인구정책 업무를 관 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 에 따라 단순히 기존 조례의 자구나 표현만을 일부 수정하게 되는 비효율을 방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그 내용도 적절함.